

입소 계약 사항

제1조 입소 계약의 목적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시설과 입소자(보호자) 사이의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 계약 및 기간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입소자(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보호자)가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하되 그 기간은 갱신 등의 장기 요양 기간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5.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반영하여 급여 변경 계약이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①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변경
 - ② 장기 요양 급여비용 변경
 - ③ 비급여 비용 변경으로 입소자(보호자)가 요청할 때 등

제3조 입소 비용

1. 장기 요양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다만, 매년 증감되는 본인부담금은 관계 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 요양 비용 수가를 반영하여 시설 내 게시한다.
2. 매년 증감되는 장기 요양 비용 수가와 기타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작성하여 게시한다.
3. 비급여 비용은 물가 상승률과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 다만, 비급여 비용을 인상할 때는 입소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4. 장기 요양 등급 등외자 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비용)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그 기준 비용 결정은 시설장의 업무로 하며, 시설장은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기타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 제공자와 입소자(보호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진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를 진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에 협조할 의무
- ④ 입소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할 의무
-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할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①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의 권리
- ③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서 알 권리
- ⑤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가족 친지 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 ⑧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 간호 및 간병, 퇴소 절차, 비용 등을 책임질 의무

5.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보호자 회의 등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입소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한 내용을 알 권리
- ⑩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⑫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계약자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특별한 사정없이 입소 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종사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때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입소비 전액을(보험료 포함)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설장이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25년 시설 급여 비용

맑은요양원

2025-01-0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일일금액		72,480		67,250		62,000	
일수		30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장기요양급여		2,174,400	2,246,880	2,017,500	2,084,750	1,860,000	1,922,000
일반	공단부담금(80%)	1,739,520	1,797,510	1,614,000	1,667,800	1,488,000	1,537,600
	본인부담금 20%(A)	434,880	449,370	403,500	416,950	372,000	384,400
	합계 (A+D+E+F)	857,880	886,470	826,500	854,050	795,000	821,500
감경 (40%)	공단부담금(88%)	1,913,480	1,977,260	1,775,400	1,834,580	1,636,800	1,691,360
	본인부담금 12%(B)	260,920	269,620	242,100	250,170	223,200	230,640
	합계 (B+D+E+F)	683,920	706,720	665,100	687,270	646,200	667,740
감경 (60%)	공단부담금(92%)	2,000,450	2,067,130	1,856,100	1,917,970	1,711,200	1,768,240
	본인부담금 8%(C)	173,950	179,750	161,400	166,780	148,800	153,760
	합계 (C+D+E+F)	596,950	616,850	584,400	603,880	571,800	590,860
비 급 여	식자재비 (D)	1식(4200원) X 3식		1식(4200원) X 3식		1식(4200원) X 3식	
	간식비 (E)	1일 (1500원)		1일 (1500원)		1일 (1500원)	
	식간식비 합계	423,000	437,100	423,000	437,100	423,000	437,100
	기타 비급여 (F)	※ 경관유동식 : 4800원 (1식 기준) / 30일 : 432000원 ※ 이미용은 자원봉사료 대체 / ※ 4,5등급은 3등급 비용과 동일					